



제39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 단축 등〉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793호)

2021. 8.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 단축	3
2.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한계 명확화	6
3. 그 밖에 검토 필요 사항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추경호 · 윤두현 · 허은아
권명호 · 김정재 · 윤희숙
정운천 · 이 영 · 박 진
이채익 · 김미애 · 임이자
송석준 · 김석기 · 이현승
이명수 · 양금희 · 최형두
전주혜 · 강민국 · 김영식의원(21인)

2. 제 안 일 : 2021. 7. 28.

3. 회 부 일 : 2021. 7. 29.

※ 의안번호 : 11793

II.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는 심사로 인해 법안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7월 23일 있었던 여야 합의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함(안 제86조제3항).
- 나.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함(안 제86조제5항).

IV. 검토의견

1.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 단축

현행 국회법 제86조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없이 120일 이내에 마치지 못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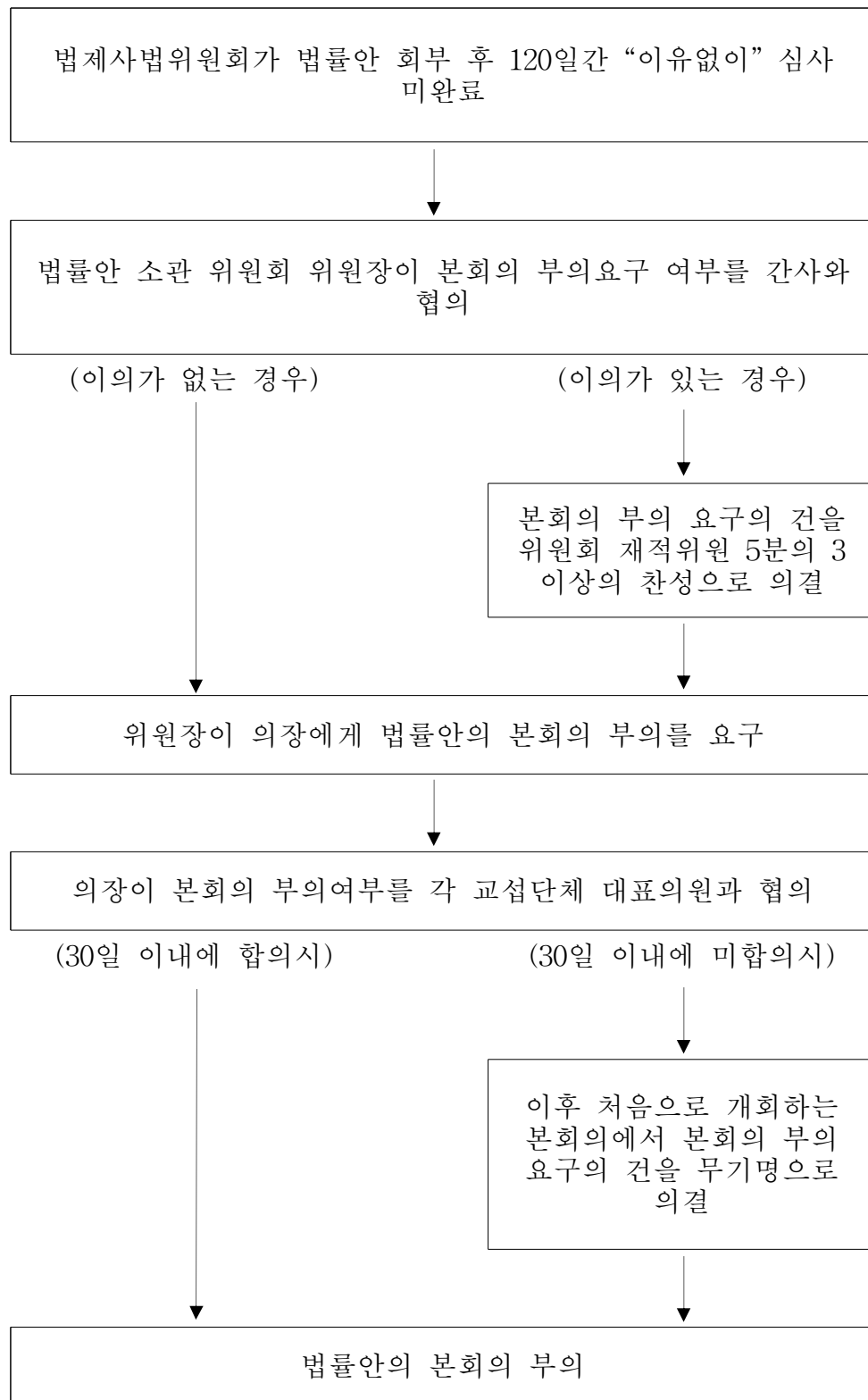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로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견이 없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후 의장은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고, 기한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제도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률안을 장기간 계류시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나,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적용사례는 2021년 8월 현재까지 1건에 불과하였음.¹⁾

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2017년 11월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2017년 11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였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부

[그림-1] 현행 국회법에 따른 법사위 계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절차



의한 후, 2017년 12월 8일에 의결된 경우가 있음.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보다 조속한 법률안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②(생략)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u>120일 이내</u> 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안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②(현행과 같음) ③ ----- ----- ----- <u>60일</u> <u>이내</u> ----- ----- ----- -----. ----- ----- ----- ----- ----- -----.

2.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한계 명확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는 한편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구” 심사는 법률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상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문언을 정비하는 것을 의미함.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고²⁾,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³⁾ 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권을 존중하고, 국회 법률안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2) 제19대 국회(2013년 5월)에서 통과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소관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단계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사업장매출의 5%’로 하향 조정되었고,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 이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라는 비판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3) 제20대 국회(2017년 12월)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6년 11월 30일 의결되었으나 2017년 11월까지 1년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장기 계류된 바 있음.

법제사법위원회가 동 법안을 계속 심사하지 않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의거 이유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보아 여야 간사와 협의 후 동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부의 요청하였으며, 2017년 12월 7일 의장이 본회의에 동 법안을 부의하여 의결하였음.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u><신설></u>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u>⑤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u>

다만,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권을 매개로 상임위원회간 또는 정부 부처간 이견 조정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 상임위원회간 또는 정부 부처간 이견 조정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3. 그 밖에 검토 필요 사항

개정안 부칙은 개정 법률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시행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도 동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적용례의 신설을 통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참고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안, 1981)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폐지하면서 상임위원회간 또는 정부 부처간 이견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부처간 이견을 협의·조정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14

